

의안번호	제64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발의자	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7
----------	-----

발의연월일: 2017년 6월 26일

발 의 자: 임헌경, 정영수, 이종욱,
이숙애, 윤홍창, 최광욱,
김영주

1.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4조)
- 다.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미세먼지 측정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안 제7조)

바. 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안 제8조)

사. 예산지원(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협의완료(체육보건안전과 보건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5호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
2.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환경기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치원장, 학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점검 등) ① 교육의 장은 연 2회 이상 교사(校舎)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의 전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교육기관 구성원 간에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결과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이하 “선도·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처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5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mu\text{g}/\text{m}^3$)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이산화탄소(ppm)	1,000		
폼알데하이드($\mu\text{g}/\text{m}^3$)	100		
총부유세균(CFU/ 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mu\text{g}/\text{m}^3$)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m^2)	100	보건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른 미세먼지 추가 측정 예산 반영
- 관련: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1422(2017.5.25.)호

2. 비용 발생 요인

- 미세먼지 추가 측정에 따른 용역비·출장비

3. 관련조문(안)

-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6조

제6조(점검 등)

- ①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교사(校舍)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1안

- (1) 추계의 전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측정대행업 비용 및 「20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관내여비 적용

(2)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예산 추계		연도별 예산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총 계	329,724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1. 교사(校舍)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309,084	309,084	318,356	327,906	337,743	1,293,089
가 599,000원× 516교=	309,084	309,084	318,356	327,906	337,743	1,293,089
2. 미세먼지 측정 출장비	20,640	20,640	21,259	21,896	22,552	86,347
가.20,000원× 516교×2명×1회=	20,640	20,640	21,259	21,896	22,552	86,347

※ 2017년 이후 물가상승분 3%를 적용 추계

(3)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나. 2안

(1) 추계의 전제: 「20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관내여비 적용

(2)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출장비 추계		연도별 출장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측정 출장비	41,280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가.20,000원× 516교×2명×2회=	41,280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 2017년 이후 물가상승분 3%를 적용 추계

(3)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문제점: 인력부족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1(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용역비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재원 조달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의존 재원	소 계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29,724	339,615	349,802	360,295	1,379,436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2(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용역비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재원 조달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의존 재원	소 계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1,280	42,518	43,793	45,106	172,697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의거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회장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1. 측정수수료의 산정방법

측정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측정·분석 수수료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출장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측정·분석 수수료

분 야	측 정 항 목	단 위	수수료(원)
가. 대 기 (배출허용기준)	1 황산화물(SO _x)	건당	47,600
	2 암모니아(NH ₃)	"	48,600
	3 이황화탄소(CS ₃)	"	49,700
	4 황화수소(H ₂ S)	"	52,900
	5 일산화탄소(CO)	"	24,200
	6 질소산화물(NO _x)	"	46,900
	7 먼지	"	175,200
	8 비산먼지	"	109,300
	9 매연	"	13,700
	10 카드뮴,납,크롬,구리,니켈,아연 등 기타 중금속	항목당	88,700
	11 불소화합물(HF)	건당	46,000
	12 탄화수소(THC)	"	76,900
	13 염소(Cl)	"	47,800
	14 염화수소(HCl)	"	47,600
	15 시안화수소(HCN)	"	67,900
	16 포름알데히드(HCHO)	"	52,900
	17 브롬화합물(Br)	"	60,000
	18 벤젠(C ₆ H ₆)	"	74,000
	19 페놀화합물	"	53,600
	20 비소화합물(As)	"	302,300
	21 수은화합물(Hg)	"	318,700
	22 염화비닐(VCl)	"	73,500
	23 디클로로메탄(CH ₂ Cl ₂)	"	121,800
(환경기준)	1 황산화물(SO _x) (1일 기준)	건당	96,200
	2 질소산화물(NO _x) (1일 기준)	"	85,000
	3 벤젠(C ₆ H ₆) (1일 기준)	"	135,400
	4 미세먼지 (PM-10) (1일 기준)	"	90,500
	5 미세먼지 (PM-2.5) (1일 기준)	"	110,400
	6 일산화탄소 (CO) (1일 기준)	"	47,800
	7 오존 (O ₃) (1일 기준)	"	102,800
	8 납(Pb) (1일 기준)	"	98,500
	9 자동연속측정(PM-10,PM-2.5,NO _x ,CO,O ₃ ,SO _x 등 6항목 이하 1일 기준)	"	734,600
	10 자동연속측정(PM-2.5,PM-10,NO _x 등 3항목 이하 1일 기준)	"	551,400

분 야	측 정 항 목		단 위	수수료(원)
나. 수 질 (폐수·하수·오수· 하천수·호소수· 지하수)	1	수소이온농도 (pH)	건당	7,700
	2	온도	"	6,300
	3	용존산소 (DO)	"	13,300
	4	색도	"	13,600
	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39,200
	6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과망간산칼륨법	"	26,300
	7	화학적산소요구량 (CODcr) - 중크롬산칼륨법	"	26,900
	8	부유물질 (SS)	"	12,800
	9	시안 (CN)	"	41,900
	10	페놀류	"	31,700
	11	불소 (F)	"	30,400
	12	비소 (As)	"	45,300
	13	수은 (Hg)	"	39,400
	14	알킬수은	"	90,200
	15	유기인	"	106,100
	16	인산염인 (PO ₄ -P)	"	17,300
	17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항목당	15,600
	18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건당	200,2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	119,30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	119,300
	21	6가크롬 (Cr ⁺⁶)	"	30,300
	22	카드뮴, 납, 구리, 아연, 철, 망간, 알루미늄 등 기타 중금속	항목당	28,500
	23	총노르말핵산추출물질	건당	30,100
	24	노르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류)	항목당	48,700
	25	염소이온 (Cl ⁻)	건당	19,400
	26	암모니아성 질소 (NH ₃ -N)	"	33,200
	27	아질산성 질소 (NO ₂ -N)	"	17,000
	28	질산성 질소 (NO ₃ -N)	"	22,600
	29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항목당	14,800
	30	셀레늄 (Se)	건당	22,000
	31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	37,700
	32	전기전도도	"	15,900
	33	클로로필a (Chl-a)	"	12,400
	34	총대장균군 (시험관법)	"	44,800
	35	총대장균군 (막여과법, 평판집락법)	항목당	31,100
	36	스트론튬 (Sr)	건당	47,100
	37	생태독성	"	417,700
	38	맛	"	11,400
	39	냄새	"	14,400
	40	탁도	"	14,800
	41	경도	"	26,600
	4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28,800
	43	증발잔류물	"	13,200
	44	황산이온	"	42,700
	45	다이아지논	"	82,300
	46	파라티온	"	81,800
	47	말라티온	"	81,800
	48	1.1.1.-트리클로로에탄	"	92,300
	49	1.2-디클로로에탄	"	93,000

분 야	측 정 항 목		단 위	수수료(원)
	50	클로로포름	"	93,300
	51	1.4-다이옥산	건당	74,400
	5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	72,100
	53	사염화탄소	"	89,100
	54	디클로로메탄	"	92,000
	55	벤젠	"	89,100
	56	안티몬	"	48,700
	57	일반세균	"	32,500
	58	분원성 대장균군	"	32,400
	59	톨루엔	"	87,800
	60	에틸벤젠	"	91,900
	61	크실렌	"	87,800
	62	1.1-디클로로에틸렌	"	90,700
	63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87,900
	64	염화비닐	"	90,700
	65	아크릴로니트릴	"	90,700
	66	브로모포름	"	88,800
	67	총유기탄소 (TOC)	"	45,400
	68	알칼리도	"	26,200
	69	바륨	"	45,500
	70	브론산염	"	45,500
	71	유량조사 (소하천)	"	36,200
다. 해 수	1	수소이온농도 (pH)	건당	11,200
	2	화학적산소용구량 (COD)	"	31,000
	3	용존산소량 (DO)	"	15,300
	4	총대장균군	"	34,700
	5	용매추출유분	"	86,300
	6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항목당	35,900
	7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	32,200
	8	6가크롬 (Cr ⁺⁶)	건당	66,700
	9	비소 (As)	"	61,400
	10	카드뮴 (Cd)	"	66,700
	11	납 (Pb)	"	66,700
	12	아연 (Zn)	"	66,700
	13	구리 (Cu)	"	66,700
	14	시안 (CN)	"	66,200
	15	수은 (Hg)	"	68,500
	1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	200,200
	17	다이아지논	"	92,100
	18	파라티온	"	92,000
	19	말라티온	"	91,600
	20	1.1.1-트리클로로에탄	"	91,900
	21	테트라클로로에티렌	"	91,90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	66,000
	23	디클로로메탄	"	66,000
	24	벤젠	"	66,000
	25	페놀	"	53,300
	26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	90,400

분 야	측 정 항 목		단 위	수수료(원)
라.해저,하천퇴적물	1	입도	건당	97,900
	2	함수율	"	12,400
	3	감열감량	"	16,700
	4	총황	"	18,300
	5	산취발성황화물(AVS)	건당	16,100
	6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28,400
	7	유기탄소량	"	46,200
	8	구리,납,니켈,망간,아연,알루미늄,철,카드뮴,코발트,크롬	항목당	50,700
	9	비소 (As)	"	50,000
	10	수은 (Hg)	"	57,700
	11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	275,800
	12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PCBs)	"	235,300
	13	유기주석화합물 (TBT)	"	255,700
	14	유기염소계농약	"	141,000
마. 소음·진동	1	소음 (배출허용기준)	건당	141,300
	2	진동 (배출허용기준)	"	141,200
	3	소음 (환경기준)	"	271,100
	4	진동 (환경기준)	"	271,000
	5	철도소음	"	279,400
	6	철도진동	"	301,500
	7	항공기소음 (7일 연속측정)	"	7,588,400
바. 실내공기질	1	미세먼지 (PM10)	지점당	61,300
	2	이산화탄소 (CO ₂)	"	38,100
	3	포름알데히드(HCHO)- 신축공동주택/주시험법	"	148,900
	4	포름알데히드(HCHO)- 다중이용시설/주시험법	"	131,900
	5	총부유세균	"	83,000
	6	일산화탄소 (CO)	"	39,900
	7	이산화질소 (NO ₂)	"	40,000
	8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신축공동주택	"	174,600
	9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다중이용시설	"	163,500
	10	석면	"	89,200
	11	오존 (O ₃)	"	41,900
	12	라돈 (단기측정)	"	63,000
	13	라돈 (장기측정)	"	154,300
사. 악취	1	복합악취 (공기희석관능법)	건당	135,200
(지정악취)	1	암모니아	건당	58,100
	2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항목당	115,600
	3	트라이메틸아민	건당	95,500
	4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항목당	93,200
	5	스타이렌	건당	83,700
	6	톨루엔, 자일렌	항목당	90,800
	7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	85,600
	8	프로피온산, n-발레르산, n-뷰틸산, i-발레르산	"	84,800
	9	i-뷰틸알코올	건당	86,300

3. 출장비

분 야	내 역	단 위	수수료(원)
출장비	1일권으로 출장가능 지역	1일	139,000

비고 1.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한다.

2. 연육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및 숙박비를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수료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3-1호 (2013. 7. 31)를 폐지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